# ◎ 시·군지회 운영규정

제정 2008. 2. 11.
전부개정 2022. 8. 17.
개정 2024. 9. 5.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3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군장애인체육회(이하 "시·군 지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각 시·군 지회는 본회 산하지회로서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시·군장애인체육회라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시·군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설치목적)** 시·군 지회는 해당지역의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각 시·군 지회는 제3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역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지원·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군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본회가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6.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7.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8. 장애인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9.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군 선수단 훈련 및 참가 지원
10.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11.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 수업 보급

12. 지역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운영
13.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4.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시·군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5.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조직)** ①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시·군 지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 지회에 가맹하고자 할 경우, 본회가 가맹을 승인한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시·군 지회로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도 가맹경기단체 중 종목별 경기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군지회가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시·군 지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시·군 지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단체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시·군 지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④ 시·군 지회는 본회의 정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제2항에 따라 도 가맹단체 중 종목별 경기단체가 없어 시·군 지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은 단체는 추후 도 가맹단체를 결성할 경우 본회로 가맹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5.〉

**제6조(장애인체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각 시·군 지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각 시·군 지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가맹 및 탈퇴)** ① 각 시·군 지회 정가맹단체의 가맹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4. 9. 5.〉

② 각 시·군 지회는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본회 가맹단체 가맹·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군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도 가맹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군 지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시·군 지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6. 가맹단체 평가에 따라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
7. 경기력향상을 위해 시·군 지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 지회의 정가맹단체는 시·군지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관리단체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9. 5.〉

⑤ 본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시·군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시·군지회는 가맹단체에게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본회와 해당 도 가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5.〉

##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군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3인 이내의 이사(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5.〉
3. 〈삭제 2024. 9. 5.〉
4. 감 사: 2인 이하
5. 집행부의 선임임원 수는 각 시군 지회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 포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5.〉

②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을 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4. 9. 5.〉

⑦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이사 선임 권한을 총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5.〉

② 회장에는 시장·군수를 부회장 중 1인은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회장, 교육장, 사무국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⑤ 장애인과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5.〉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⑦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경우 선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5.〉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군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시·군 지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시·군 지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 임원이 시·군 지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시·군 지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가맹단체 또는 시·군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시·군 지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군 지회 임원으로서 직무도 정지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9. 5.〉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9. 5.〉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4. 9. 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4. 9. 5.〉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군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4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5.〉

1. 제13조에 해당하는 때
2. 정가맹단체 및 읍·면·동 지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 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24. 9. 5.〉

**제15조(시·군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 지회 임원에 대하여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군 지회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9. 5.〉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지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지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4. 9. 5.〉

## 제 4 장 총 회

**제17조(구성)** ① 총회는 본회 규약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시·군의 실정에 따라 구성한다. 단, 지역별 지회와 가맹단체, 선수, 심판 및 지도자 등 회원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4. 9. 5.〉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해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 9. 5.〉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장이 총회 1일 전에 시·군 지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5.〉

**제18조(기능)** 총회는 시·군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부회장, 사무국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5.〉
2. 시·군 지회의 해산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가맹단체의 가맹,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5.〉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군지회의 회장이 소집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5.〉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2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4. 9. 5.〉

③ 제2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④ 총회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0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의장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4. 9. 5.〉

③ 제1항에 따른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5.〉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시 · 군지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개정 2024. 9. 5.〉

**제23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제5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부회장, 사무국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5.〉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③ 당연직인 교육장 등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 9. 5.〉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제24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2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4. 9. 5.〉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4. 9. 5.〉

**제2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 제 6 장 각종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 ① 시・군 지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②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5.〉

## 제 7 장 시・군 가맹단체

**제29조(조직 및 구성)** ① 시・군 지회의 회원인 시・군 가맹단체는 읍・면・동 가맹단체로 조직한다. 〈개정 2024. 9. 5.〉

② 본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징계요구 시 시・군 지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 가맹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군 가맹단체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 한다. 다만, 총회가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 가맹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본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시·군 지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임원승인 및 취소)** ① 시·군 가맹단체의 임원은 도 가맹단체장의 승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 지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 8 장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제31조(장애인체육회)** 각 시·군 지회 산하에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조직구성)**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조직한다.

1. 해당지역 내 거주하는 자로서 장애인체육 또는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시·군 지회가 인정하는 개인
2. 상급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가맹단체 해당 지회

**제33조(임원의 승인 및 취소)** ① 읍 · 면 · 동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읍 · 면 · 동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시 · 군지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4. 9. 5.〉

② 시 · 군 지회장은 읍 · 면 · 동 장애인체육회 임원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의 구분)** 시·군지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및 회비
3. 본회 지원금
4. 경상북도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타 수입금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시 · 군지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5.〉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5.〉

**제36조(기금 및 적립금)** 시·군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시·군 지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4. 9. 5.〉

**제38조(회계감사)** 시 · 군지회는 시 · 군가맹단체 및 읍 · 면 · 동 장애인체육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 제10장 사 무 국

**제39조(사무국)** ① 시·군 지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을 겸 할 수 없다. 〈개정 2024. 9. 5.〉

⑤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직제 · 규정 및 경영공시)** ①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시·군 지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관련 규정과 그 외 시·군 지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제11장 보 칙

**제41조(규약개정)** ① 시·군 지회의 규약개정은 본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 회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5.〉

② 본회는 시 · 군 지회의 규약개정안을 보고 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 군 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9. 5.〉

**제42조(규정 제 · 개정 및 해석)** ① 시 · 군 지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 · 군 지회 규약을 제 ·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5.〉

② 제1항 이 외에 당해 시 · 군 지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 · 개정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시 · 군 지회의 규약은 본회 회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개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5.〉

④ 이 규정은 시 · 군 지회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규약에서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시 · 군 지회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5.〉

**제43조(제한사항)** 시 · 군 지회는 본 규정 및 본회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회가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제44조(총회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시 · 군 지회는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9. 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